

2024년도 「스마트 안전장비 지원」 사업 공고(자율신청품목)

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『스마트 안전장비 지원』사업 중 자율신청품목에 대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4월 15일

고용노동부 장관 · 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1. 사업개요

-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

※ 자율신청품목이란? 지정품목이 아니라 사업주가 사업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안전 시설·장비를 신청하는 품목

2. 신청자격

-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(건설현장 제외,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)
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'소기업 규모 기준'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[첨부1]
 - ※ 중소기업 확인서(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)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
 -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'중소기업 규모 기준'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[첨부1]
 - ※ 중소기업 확인서(중기업, 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)를 발급받아 제출하고,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

3. 참여제한

-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참여 제한하며,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

<참여 제한 사유>

- ▶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
- ▶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(보조금 부당수급 등)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
- ▶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
- ▶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(단,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 각 호(제1호 및 제25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은 제외한다)에 따른 기계·기구·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)
- ▶ 당해년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사업,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, 안전동행지원사업,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
- ▶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금년도 2회 이상 결정 받은 사업장

4. 지원내용

- (지원한도)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까지*

- *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%, 부가세 미지원
- * 기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,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

- ▶ 각각 최대 1,000만원 추가 지원: ①고용증가 사업장(1명당 200만원 범위,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한함), ②위험성평가가 인정사업장, ③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, ④고위험업종*(6개업종)

- * ①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(21831), ②기타각종제조업(22910), ③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(20910), ④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(21809), ⑤강선건조또는수리업(22601), ⑥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(21801)

- (지원품목)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

- ▶ 다음의 조건을 토대로 안전보건공단 판단하는 스마트 안전장비

- 1) 산업재해 예방 또는 근로자 안전·보건 조치 확보를 위한 제품
- 2) 인공지능·로봇공학·정보통신·사물인터넷·센서기술 중 1개 이상이 적용된 제품
- 3) 국가 및 정부부처 등의 스마트·신기술·혁신 관련 인증*을 받은 제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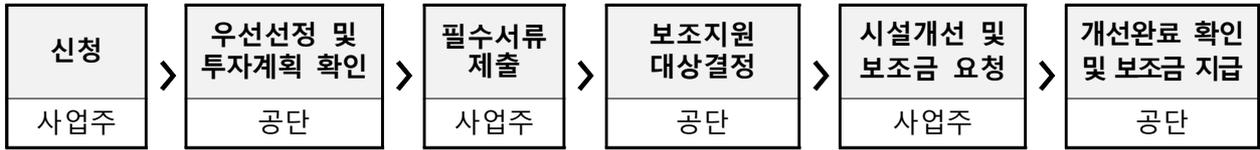
- * 혁신제품,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, 신기술(NET 등)인증 제품

(참고) “자율신청품목”으로 지원불가 제품

- [첨부 기] 중 31번 항목인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에 해당하는 제품
- 안전보건공단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보조지원이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제품 예) 개발 중인 제품, 단순부품, 소프트웨어(어플, 프로그램), 임차 제품, 소모품, 스마트폰 등

- 지급 및 최소성능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[첨부2] 참조

○ (지원절차)



5. 신청기간 및 방법

○ (지원예산) 재원 한도 내('24년 350억원)

○ (신청기간) '24. 4. 15.(월) 14:00 ~ 5. 14.(화) 16:00

○ (신청방법) 온라인을 통한 신청·접수

-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(오프라인 신청불가)

☞ 온라인 신청 메뉴얼: clean.kosha.or.kr > 알림마당 > 공지사항 해당 공고 내 붙임 참조

※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

※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, 지원품목 제작·판매 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

○ (제출서류)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

※ 온라인 신청 시 「참여사업장 이용 동의」 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명으로 서명하고, 대표자(담당자)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

<신청단계 상세 제출서류>

| 구 분 | 비고 |
|--|-------|
| 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| (첨부4) |
| ②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 | (첨부4) |
| ③ 신기술 적용 관련 증빙서류(시험성적서, 인증서 사본 등) | |
| ④ 스마트·신기술·혁신 관련 인증서 사본 | |
| ⑤ 견적서 | |
| ⑥ 제품 사진 등이 포함된 설명자료(카탈로그, 설명서 등) : 제품명, 외관사진, 사양, 규격, 기능, 도면 등 ※ 최소성능기준에서 제시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. | |

<필수 서류(보조금 결정 전까지 제출)>

| 구 분 | 비고 |
|---|--------------|
|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제출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 | |
| ②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 ※ 제작·판매업체 서명은 견적서의 제작·판매업체와 일치 | (첨부4) |
| ③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| 해당시 |
| ④ 사업자등록증, 자동차등록증, 자동차등록원부,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- 이동식크레인,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,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, 차량계 건설기계·하역운반기계 등 해당 시 | 해당시 |
| ⑤ 중소기업 확인서(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) ※ 50인 이상인 경우 | 해당시 (첨부1) |
| ⑥ 중소기업 확인서(중기업, 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),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사업장 협력업체 확인 서류 ※ 50인 이상,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인 경우 | 해당시 (첨부1) |
| ⑦ 추가지원 증빙자료(강소기업, 근로자수, 위험성평가 인정) | 해당시 |
| ⑧ 안전인증서 사본 | 해당시 |

※ ①는 「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> 증명서발급」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

☞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생략

☞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,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

※ ③의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는 투자계획 시 신청품목과 동일 모델의 실거래 전자세금 계산서(5건 이상)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시 원가계산(검토)보고서 제출[첨부2 확인]

6. 보조금 지급조건

-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스마트 안전 장비 구입·설치 등 유해·위험요인 개선을 완료하고, 제출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

- (투자완료기간)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

※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,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

- (확인요청)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·설치 등 완료 후,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여, 공단의 확인을 요청

<투자완료 시 상세 제출서류>

| 구 분 | | 비고 |
|--|--|--|
| ①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 | | |
| ②-1 실거래 입증서류: 거래내역 증빙 | | |
| 오프라인 구매 시 | | 온라인 구매 시 |
| (제품 구매) 계약서 사본 1부 | | 구매내역(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) * 포함내용: 모델명, 수량, 금액, 결제방법 |
| ②-2 실거래 입증서류: 입금증빙서류 | | |
| ③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(검토)보고서 | | 해당시 |
|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 | | |
| ⑤ 지급보증보험증권 | | (첨부5) |
| ⑥ 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(구매(제작·판매)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) | | 해당시 (첨부6) |
| ⑦ 품목별 안전인증, 안전검사 등 인증·검사 관련 서류 | | 해당시 |
| ⑧ AI 카메라 설치 서약서 (해당시) | | 해당시 (첨부4) |
| ⑨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※ 품목별 「사업장 전경 및 지원품목 설치대상 작업 증빙사진(투자완료)」 | | (첨부4) |
| ⑩ 품목별 「스마트 안전장비 시설개선 완료 증빙사진」 | | (첨부4) |

※ ④는 「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> 증명서발급」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

☞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생략

☞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,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

※ ⑥의 「하자보증보험증권」은 제작·판매업체가 보조금 지급사업장에 제공하고, 보조금 지급사업장은 공단에 사본을 제출

<입금 증빙서류>

(오프라인 구매시)

① (무통장입금) **이체확인증* + 전자세금계산서 +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(원본대조필)**

*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입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지급금액 등 포함

(온라인 구매시)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

① (무통장입금) **이체확인증 +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(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(국세청 홈텍스))**

*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입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지급금액 등 포함

② (카드결제) **신용카드매출전표 + 신용카드복사본***

- (사용가능카드) 법인카드(법인)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(개인사업자)
- (신용카드복사본)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
- (신용카드매출전표) 공급자와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

7. 선금급 (요청 시)

- 사업주의 초기 비용부담을 감소시키고, 신속한 해당 사업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·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선금 지원 운영
-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, 선금급 신청양식*과 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 경우, 보조결정금액의 70%이내에서 선금급 가능

* 온라인 신청 시 선금급 신청 여부에 사전체크한 경우는 생략 가능

8.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, 투자기업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,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(최대 5배)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

※ (거짓·부정) 보조금 및 5배 추가 환수, 5년 제한, (임의매각·훼손·분실)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, 3년 제한, (목적외사용·국외이전)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, 3년 제한

9. 취소사항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58조제2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,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금 지급이 취소되고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(환수)하여야 함

<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지원 취소 사유>

- ▶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- ▶ 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
- ▶ 지원 대상을 임의매각·훼손·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·관리·사용하지 아니한 경우
- ▶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
- ▶ 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
- ▶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▶ 그 밖에 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」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

10. 기타사항

-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에 설치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- 문의처: 대표번호(1544-3088)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
 - ☞ 별첨 또는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>알림마당>지역별 문의처 참고
- **(사후관리)**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
 -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기술지도 실시
 - 사후관리기간(3년)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,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
- **(품질보증)** 사후관리기간 동안 A/S가 유지토록 지원품목은 품질 보증기간*(3년) 의무가 확보되어야 함
 - * 1년 무상, 2년 유상(제품의 본질적 문제는 제작·판매업체 부담 조건)
- **(명판부착)** 기본적인 제반정보*를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기재하여 부착
 - * 필수정보: 제품명(모델명포함), 일련번호, 제조년월, 제작업체명, 판매업체명(연락처)
 - ※ 스티커, 종이 및 그 밖에 쉽게 파손·변형·지워지는 재질(방법)로의 부착은 불가하며,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

■ 개요

- 중소기업 확인서(소기업)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해, 50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하고자 함
(다만,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일 경우 중기업도 지원대상)

Q. 중소기업이란?

중소기업은 ①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
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.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과,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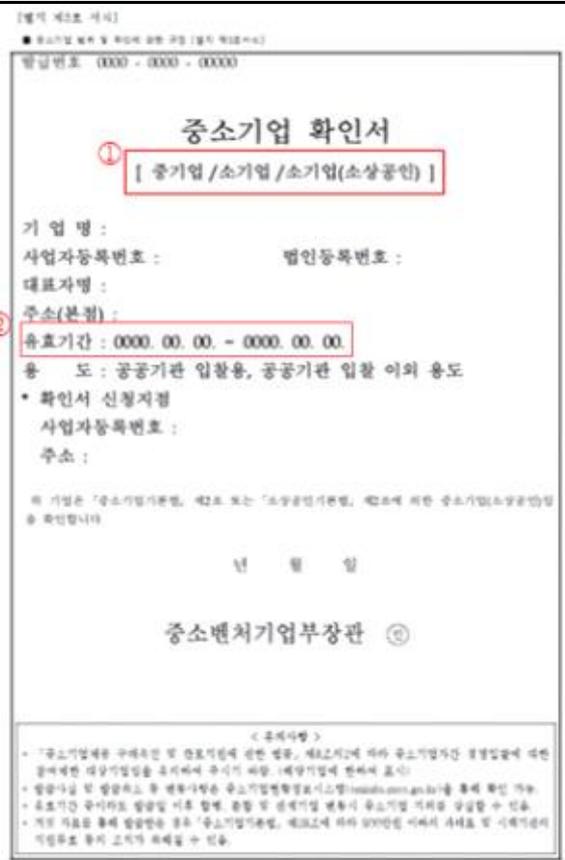
■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



-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(오프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참조)

- 문의

- 일반상담(중소기업통합콜센터) : 국번없이 1357
- 온라인자료제출, 중소기업현황 : 02-3215-2674



■ 확인사항중

- ① 신청사업장이 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에 한하여 지원(중기업의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임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)
- ② 유효기간 : 유효기간 내 신청 사업장인 경우 지원가능
 - ※ 유효기간 산정기준 : 1년(+3개월)
 -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,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
 - 다만, 직전(또는 당해)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 달리 적용

첨부 2

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지급 및 최소성능기준

- (품목설명) 특정품목이 아니라 사업주가 사업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안전 시설장비를 신청하는 품목
- (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) 아래에 해당되는 인증, 확인서 및 관련 서류 제출

| 품목명 | 보조금 지급기준 |
|---------|---|
| 자율신청 품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재해 예방 또는 근로자 안전·보건 조치 확보를 위한 제품일 것 ○ 인공지능·로봇공학·정보통신·사물인터넷·센서기술 중 1개 이상이 적용된 제품일 것 ○ 국가 및 정부부처 등의 스마트·신기술·혁신 관련 인증*을 받은 제품일 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혁신제품,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, 신기술(NET 등)인증 제품 ○ 이동식크레인,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,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, 차량계 건설기계·하역운반기계 등에 부착하는 경우 관련 기계는 신청사업장 소유일 것 <p>(참고) "자율신청품목"으로 지원불가 제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[첨부 7] 중 31번 항목인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에 해당하는 제품 - 안전보건공단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보조지원이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제품 예) 개발 중인 제품, 단순부품, 소프트웨어(어플, 프로그램), 임차 제품, 소모품, 스마트폰 등 |

| 품목명 | 최소성능기준 |
|---------|---|
| 자율신청 품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 조건(해당 시 그 부분만 충족, 다만 여러 개인 경우, 일체 충족할 것) 1. 제품이 비, 분진 등에 노출되어 제품의 고장·성능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IP55이상 만족 또는 별도 케이스 설치 등 조치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IP55이상 시험성적서(또는 인증서) 또는 별도 조치 계획 제출 2. 인공지능(AI) 사용 → 인공지능(AI) 기능·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가 있는 제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한국인정기구(KOLAS) 또는 국제인정협력체(ILAC, APLAC)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"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3. 무선 통신 사용 → KC(전파인증) 인증을 받은 제품 4. 안전인증·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 경우 → KCs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(단, 설치 시 또는 주요 구조부 변경으로 인한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시까지 인증서 제출) 5. 힘을 보조하는 제품 → 근력(힘)을 유지 또는 감소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한국인정기구(KOLAS) 또는 국제인정협력체(ILAC, APLAC)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"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6. 제품 관련 타 법령 및 그 외 기타 등은 관련 증빙서류(시험성적서, 인증서 등) |

유의사항

- 신청(공모) → 우선선정 → 투자계획확인 → 필수서류 제출 이후 일선기관별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투자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심사결과 "적정" 시 지원가능
-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투자계획확인 후 결정 전까지 신청품목과 동일 모델의 실거래 세금계산서(5건 이상)를 제출하거나, 투자완료확인(요청)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(검토)보고서 제출 필요

※ 우선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최우선선정

- ① '23년도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기업, ②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,
- ③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 기업
- ④ 특별재난지역(산불 등의 피해지역) 내 피해사업장

| 선정 항목 | 항목별 가중치 | 비고 | | | 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|-----|-----|--|--|
| ■ 공통적용 항목 | 최대 70점 | | | | | | | | | |
| ①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- 근로자수 5인 미만 10점, 5~10인 미만 5점, 10~20인 미만 3점 | 최대 10점 | 접수일 기준 최근 확정 공식통계 상시근로자수 기준 | | | | | | | | |
| ② 최근 3년간('21~'23년) 보조금 지급을 받지 않은 사업장 | 5점 | | | | | | | | | |
| ③ 사고사망만인율 상위 업종 | 최대 15점 | '23년 공식통계 기준 중업종 단위배점 | | | | | | | | |
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사고사망만인율 2배수 이상</th> <th>사고사망만인율 1~2배수 이내</th> <th>사고사망만인율 0.5~1배수 이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배점</td> <td>15점</td> <td>10점</td> <td>5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분 | 사고사망만인율 2배수 이상 | 사고사망만인율 1~2배수 이내 | 사고사망만인율 0.5~1배수 이내 | 배점 | 15점 | 10점 | 5점 | | |
| 구분 | 사고사망만인율 2배수 이상 | 사고사망만인율 1~2배수 이내 | 사고사망만인율 0.5~1배수 이내 | | | | | | | |
| 배점 | 15점 | 10점 | 5점 | | | | | | | |
| ④ 최근 3년간('21~'23년) 추락·끼임·부딪힘 사고 재해자 발생 사업장 | 최대 20점 | '21~'23년 공식통계 기준 | | | | | | | | |
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3년 발생</th> <th>2년 발생</th> <th>1년 발생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배점</td> <td>20점</td> <td>15점</td> <td>10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분 | 3년 발생 | 2년 발생 | 1년 발생 | 배점 | 20점 | 15점 | 10점 | | |
| 구분 | 3년 발생 | 2년 발생 | 1년 발생 | | | | | | | |
| 배점 | 20점 | 15점 | 10점 | | | | | | | |
| ⑤ AI기반 고위험 예측사업장(위험도 기준) | 최대 20점 | ※ 선정일 기준 전월 위험도 - 공단 빅데이터「고위험사업자 예측」결과 활용 ※ 위험률 정도에 따른 점수부여 - 저위험군(0.0~0.2미만) - 중위험군(0.2~0.8미만) - 고위험군(0.8~1.0) | | | | | | | | |
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고위험군</th> <th>중위험군</th> <th>고위험군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배점</td> <td>20점</td> <td>15점</td> <td>10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분 | 고위험군 | 중위험군 | 고위험군 | 배점 | 20점 | 15점 | 10점 | | |
| 구분 | 고위험군 | 중위험군 | 고위험군 | | | | | | | |
| 배점 | 20점 | 15점 | 10점 | | | | | | | |
| ■ 자율활동 우수항목 | 최대 30점 | | | | | | | | | |
| ⑥ KOSHA-MS 인증 사업장 | 15점 | 인정 유효기간 내 보조금신청 시 점수 부여 | | | | | | | | |
| ⑦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| 10점 | 인정 유효기간 내 보조금신청 시 점수 부여 | | | | | | | | |
| ⑧ 아래의 사업에 참여사업장 ① 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 업체,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사업장, ③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참여 사업장 - 세가지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※ 다만, 5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(위탁) 사업장에 점수 부여 | 5점 | '23,'24년도 사업 참여사업장 | | | | | | | | |
| ■ 가점 항목 | (가점) 20점 | | | | | | | | | |
| ⑨ 기술원 및 유관기관(중기부 등) 혁신(추천)제품 ※ 인정범위 :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, 신기술(NET)인증 제품, 환경부 혁신제품,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, 그 외 국가 및 공인기관 인증 등 | 20점 | 관련 증빙(확인서, 인증서 사본 등 신청 시 제출) | | | | | | | | |
| 계 | 최대 100점 | | | | | | | | | |

※ 개별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(②→③→④→⑤→⑥→⑦)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우선선정
 ※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사업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⑧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 업체로 수정

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

1. 사업장 현황

○ 공정흐름도



○ 생산품 또는 작업내용(2줄 내외로 간략히 작성)

- (예) 무인운반차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화장품 박스 적재 장소로 이송

2.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필요성(현실태 및 유해·위험요인 포함)

- (예) 보유하고 있는 무인운반차에 경고장치(경광등, 부저) 및 센서가 미부착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음.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를 도입하여 무인운반차 근처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 경고장치로 알려 위험 경고를 알리고, 서행·정지하여 부딪힘을 예방하고자 함

3. 자율신청품목 투자공정 위험성평가 점검표

○ 투자 공정명 : 이송작업

| 재해유형 | | | | 현실태 및 위험요인 | 확인결과 | | 개선방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끼임 | 떨어짐 | 부딪힘 | 기타 | | 적정 | 보완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[] | 위험지역 접근에 따른 위험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 장치를 도입하여 부딪힘 예방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[] | 유해위험물의 안전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[] | 불시기동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위험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[] | 시설물 등 이상상태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[] | 인화성 물질 취급공정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[] | 유해가스 취급 발생 공정으로 인한 질식, 건강장해 등의 위험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[] | 근골격계 질환 등의 건강 장해 위험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[] | 기타 위험 []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
※ 자율신청품목 투자공정에 대해서만 작성

※ 끼임, 떨어짐, 부딪침 위험 외 기타 재해유형의 경우, 추가 작성

4. 투자대상 공정 또는 교체설비 및 현장전경

| | |
|--------|--------|
| | |
| 투자대상공정 | 현장 전경 |
| | |
| 설비 사진1 | 설비 사진2 |
| | |
| 설비 사진3 | 설비 사진4 |

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

1. 제공·설치 예정인 스마트 안전장비(가) 아래와 같이 기준 이상임을 확인 및 서약합니다.

| 품목명 | 신청 품목명 |
|--|--------|
| 보조금 지급기준 |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재해 예방 또는 근로자 안전·보건 조치 확보를 위한 제품일 것 ○ 인공지능·로봇공학·정보통신·사물인터넷·센서기술 중 1개 이상이 적용된 제품일 것 ○ 국가 및 정부부처 등의 스마트·신기술·혁신 관련 인증*을 받은 제품일 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혁신제품,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, 신기술(NET)인증, 그 외 공공기관 신기술 등 인증 제품 ○ 이동식크레인,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,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, 차량계 건설기계·하역운반기계 등에 부착하는 경우 관련 기계는 신청사업장 소유일 것 | |
| (참고) "자율신청품목"으로 지원불가 제품 |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[첨부 기 중 31번 항목인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에 해당하는 제품 - 안전보건공단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보조지원이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제품 예) 개발 중인 제품, 단순부품, 소프트웨어(어플, 프로그램), 임차 제품, 소모품, 스마트폰 등 | |
| 최소성능기준 |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 조건(해당 시 그 부분만 충족, 다만 여러 개인 경우, 일체 충족할 것) 1. 제품이 비, 분진 등에 노출되어 제품의 고장·성능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IP55이상 만족 또는 별도 케이스 설치 등 조치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IP55이상 시험성적서(또는 인증서) 또는 별도 조치 계획 제출 2. 인공지능(AI) 사용 → 인공지능(AI) 기능·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가 있는 제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한국인정기구(KOLAS) 또는 국제인정협력체(ILAC, APLAC)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"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3. 무선 통신 사용 → KC(전파인증) 인증을 받은 제품 4. 안전인증·차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 경우 → KCs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(단, 설치 시 또는 주요구조부 변경으로 인한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시까지 인증서 제출) 5. 힘을 보조하는 제품 → 근력(힘)을 유지 또는 감소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한국인정기구(KOLAS) 또는 국제인정협력체(ILAC, APLAC)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"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6. 제품 관련 타 법령 및 그 외 기타 등은 관련 증빙서류(시험성적서, 인증서 등) | |

2.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가 제공·설치한 스마트 안전장비(구성포함)의 “설치·제공 장비 성능” 이 “최소성능기준” 에 미달 또는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, 지원 품목 제작·판매업체 및 지급신청사업장 각각의 귀책에 따라 책임의 의무가 있으며,
3.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158조 및 융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정(고시), 그 밖에 공단 내규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.

위 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·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.

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명 : △△AI 사업주 : 김 안전 (서명)

지급신청사업장명 : OO 종합건설 사업주 : 이 보건 (서명)

인공지능(AI)관련 카메라 설치에 대한 서약서

1. 지급대상사업장()은 해당 스마트 안전장비()를 설치하기 위해 아래에 법적 사항을 준수하였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, 지급대상사업장()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 및 서약합니다.

◆ (공 통) 근로자 대표*가 해당 스마트 안전장비()의 설치를 동의하였으며, 설치 주변 잘 보이는 장소에 "시설안전(산업안전) 및 화재예방"목적으로 해당 스마트 안전장비()를 설치하였음을 안내하는 표지 등을 부착하여 공지하였음.

* 근로자대표 :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,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

◆ (근로자 30인 이상) "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"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·구성하고, 제20조 1항 14호 "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"에 따라 해당 스마트 안전장비()의 설치를 협의하고, 회의록을 작성하였음

위 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·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.

지급대상사업장명 :

사업주 :

(서명)

근로자대표 :

(서명)

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

▶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사업과 관련하여,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일부(또는 전부)를 대납하게 하거나 되돌려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추후에도 하지 않겠음을 확인하는 절차이며,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, 보조금 환수(제재부가금 포함), 사업참여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사업주가 직접 서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□ 클린사업 보조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일부(또는 전부)를 현금 또는 계좌 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하며,

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, 보조금 환수(제재부가금 포함), 사업참여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인합니다.

※ 클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(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)는 투자금액 중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주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직접 납부하여야함. 만약 이를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 등을 통해 되돌려 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관련 법령

[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]

제4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
1.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

[형법]

제347조(사기)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
20 . .

사업장명 :

사업주 성명 :

(서명)

스마트 안전장비 시설개선 완료 증빙사진(투자완료)

| | | | |
|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
| 사업장명 | (주)△△산업 | 작성일자 | 20 |
| <p>□ 설치 및 구매 품목명 :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</p> <p>○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명 : □□시스템(주)</p> <p>○ 완료 증빙사진</p> | | | |
| 사진1 | | 사진2 | |
| 사진 제목1 | | 사진 제목2 | |
| 사진3 | | 사진4 | |
| 사진 제목3 | | 사진 제목4 | |
| 사진5 | | 사진6 | |
| 사진 제목5 | | 사진 제목6 | |

※ 필요에 따라 사진(칸) 등을 추가하여 작성

<하자보증보험 증권 설명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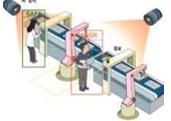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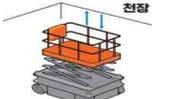
- ▶ 계약기간 : “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 + 3년 2개월으로 적용
 - ※ 예시) ① 투자완료확인 요청일이 '24.6.30.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'24.6.15. 경우 '24.6.15. + 3년 2개월 => '24.6.15. ~ '27.8.14.
 - ②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 날짜로도 발행 가능 '24.6.1. 발행 시 '24.6.1. + 3년 2개월 가산하여 => '24.6.1. ~ '27.7.31.
- ▶ 피보험자 : 지급대상사업장, 보험계약자 :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
 - ※ 주계약금액 보증금율 : 계약금액(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)의 30% 이상
- ▶ 필요서류 : 지급대상사업장과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간 계약 당시 계약서 (견적서 및 결정통보서 같음가능)
- ▶ 발급기관: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
 - ※ 하자보증보험 계약은 건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을 모두 가능하여야 함
 - ※ 문의처: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(052-274-0021) 또는 관할 지역 지점

<작성 예시 >

| 하자보증보험증권 (인터넷 발급용)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|---|
| 증권번호 | 계 | 호 | |
| 기본사항 | | | |
| 보험계약자 | | 피보험자 | |
| 보험가입금액 | | 보험료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일시납 <input type="checkbox"/> 분납 |
| 보험기간 | 2024년 6월 15일 ~ 2027년 8월 14일 | | |
| 보증하는 사항 | | | |
| 보증내용 | 하자보증금 | | |
| 특별약관 | 1.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.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
| 특기사항 | | | |
| 주계약내용 | [주계약내용] 주계약명 담보기간 계약체결일자 계약금액 보증금율 | | |
| | 호치원 산업안전보건센터 교육훈련 역량강화 사업 실습·체험 교육시설 및 장비 등 제작·운용·현장 설치 2024년 6월 15일 ~ 2027년 8월 14일 30% | | |

첨부 7

스마트 안전장비 지정품목

| 연번 | 품목명 | | 설 명 | 관련 그림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1 | 인공지능 (AI)기반 인체감지 시스템 | 고정식 | 인공지능(AI)모델 기반으로 카메라 또는 센서(Lidar 등)을 통해 위험영역 행동, 사고발생 등을 인지하여 경보 또는 조치를 수행하는 시스템 |  |
| 2 | | 이동식 | 인공지능(AI)기반 모델 및 이동통신기술이 적용된 카메라를 통해 근로자가 상시 이동하는 작업(건설)현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행동·상황 등을 인지하여 모니터링 및 경보를 해주는 장비 |  |
| 3 | 고위험 기계 설비 스마트 통합 안전 시스템 | ILO | 고위험 기계설비에 센서와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접근 및 행동에 따라 설비의 전원차단 및 정지하는 시스템 |  |
| 4 | | 인공지능 | 고위험 기계설비에 센서 및 인공지능(AI)와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접근 및 행동에 따라 설비의 전원차단 및 정지하는 시스템 |  |
| 5 |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| | 이동형 설비에 센서와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 등 충돌 위험시 서행·정지하는 시스템 |  |
| 6 |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| | 고소작업대와 천장 사이에 거리(높이)를 센서로 측정하여 위험 높이인 경우, 자동정지하는 장치 |  |
| 7 | 인공지능 (AI)스마트 크레인 충돌 방지 장치 | 기본 | 크레인에 인공지능(AI)기반 모델과 카메라를 설치하여, 근로자가 낙하물로 인한 깔림 위험구역에 근접하는 경우, 경보 및 정지하는 시스템 |  |
| 8 | | 흔들림 방지장치 (옵션) | 크레인이 물건을 인양·이동시 발생하는 흔들림을 제거하여 물건의 떨어짐 사고를 예방 |  |
| | | | 무선, ICT, 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 안전 장치로서 다음을 말함 |  |
| 9 | 차량계 건설 및 하역운반 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| 전도예방 장치 | 하역운반기계가 중량물 운반시 무게와 중심을 감지하여 전도 등을 예방하는 장치 |  |
| 10 | | 충돌방지 장치(카메라 센서형) | 카메라·센서를 통해 하역운반차량이 주변 근로자와 충돌 위험을 경보장치로 알려 예방하는 장치 |  |
| 11 | | 자동·서행 및 정지장치 | 무선장치 및 태크(tag) 등을 통해 전동지게차 및 근로자가 접근하여 충돌위험이 있을 경우, 거리별로 서행 및 정지하는 장치 |  |
| 12 | | 부착형 충돌방지 장치 | 중장비에 자석 등으로 모니터, 카메라, 경보기 등을 부착하여 사람을 인식하여 접근 시 경보발생 |  |
| 13 | 스마트 통합 전도 방지시스템 | 이동식 크레인 | 각 설비에 센서 및 전도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 전도를 예방하고, 무선통신을 통해 전도의 상태 및 위험 등을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|  |
| 14 | |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| | |
| 15 | |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| | |

| 연번 | 품목명 | | 설 명 | 관련 그림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|
| 16 | 화학 사고예방 통합 모 니터링 시스템 | 고정식 | 인화성가스·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감지기, 수신반 등을 설치하여, 가스누출상황을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모니터링·경보 할 수 있는 시스템 | |
| 17 | | 이동식 | 인화성가스·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이동식 감지기, 수신반 등을 휴대 및 상시 비치하여 가스누출상황을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모니터링·경보 할 수 있는 시스템 | |
| 18 | | 인공지능 (AI) 화재 감지기 | 인공지능(AI), IoT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불꽃 등을 초기에 인지·반응하여 화재·폭발재해를 예방하는 장비 | |
| 19 | | 인공지능 (AI) 계측 장치 | AI카메라를 통해 아날로그(바늘, 막대, 숫자형 등) 계측기의 측정값을 변환하여 서버 및 관리자에게 전송하는 장치 | |
| 20 | | 화학물질 누출 방지형 | 검출대상물질(유해화학물질 등)과 일반 액체(빗물 등)를 선택적으로 감별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누액감지 센터 및 모니터링 시스템 | |
| 21 | | 방폭 정전기 측정기 (옵션) | 인화성가스·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방폭안전인증을 받은 정전기 측정기를 통하여 안전하게 점검하고, 이를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 등과 연결하여 작업관리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 | |
| 22 | 이륜차 운전자 착용 형 충돌보호 에어백 조끼 | | 이륜차 운전자가 충돌 등으로 자리에서 이탈하는 경우, 조끼와 이륜차에 연결된 고리가 풀리면서 에어백이 작동 | |
| 23 |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| 전기사고 예방장치 | 사물인터넷(IoT), 정보통신기술(ICT)을 이용하여 전력사용에 대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전력 이상* 발생 시 알림 및 조치하여 전기 관련 재해를 예방하는 장치 * 전력 이상: 과부하, 누전, 이상주파수, 과전압, 전원꺼짐, 온도상승(화재) 등 | |
| 24 | | 아크제거 장치 | 센서 등을 통해 수배전반에 발생하는 전기아크를 감지하여 순간적으로 제거하는 스마트 안전장치 | |
| 25 | 근력보조 슈트 | | 고정자세,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이 되는 작업을 인공골격·근육, 센서 및 동력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줄여주는 슈트 | |
| 26 |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| | 사람이 취급하기에 무겁고 다양한 중량물을 일정한 힘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장치 | |
| 27 | 스마트 안전보건 | 귀마개 | 전파 및 그 밖에 스마트 기술 등을 통해 소음을 제거하는 귀마개 | |
| 28 | 개인 보호구 | 방진 마스크 | 호흡과 연동된 센서를 통하여 공급 유량을 자동으로 조절이 가능한 전동식 방진마스크 | |
| 29 |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| | 무선통신(IoT)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을 통해 공간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밀폐 작업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질식·중독재해를 예방하는 장비 | |
| 30 | 유해물질 통합안전예방관리 시스템 | | 사물인터넷(IoT), 정보통신(ICT)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을 통해 유해물질의 사용량, 정보, 노출량 등 사용정보와 환기장치의 모니터링·통제 등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| |
| 31 |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※ 관리품목 | | 무선, ICT, 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인체감지 충돌예방 장치가 설치된 전동지게차로서 충돌 위험 시 경보장치로 위험을 알리고, 무선통신으로 관리자 등에게 알려 조치할 수 있는 장비 | |

| 일선기관명 | 관할지역 | 연락처 |
|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
| 서울광역본부 | 서울특별시(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, 서초구, 강남구, 용산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은평구) | 02-6711-2899 |
| 강원지역본부 | 강원도(춘천시, 원주시, 홍천군, 인제군, 화천군, 양구군, 횡성군), 경기도(가평군) | 033-815-1035 |
| 서울남부지사 | 서울특별시(영등포구, 양천구, 강서구,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) | 02-6924-8739 |
| 서울동부지사 | 서울특별시(성동구, 광진구, 송파구, 강동구, 중랑구, 노원구, 강북구, 도봉구, 상북구) | 02-2086-8026 |
| 강원동부지사 | 강원도(강릉시, 속초시, 동해시, 태백시, 삼척시, 양양군, 고성군, 영월군, 정선군, 평창군) | 033-820-2572 |
| 부산광역본부 | 부산광역시 | 051-520-0678 |
| 울산지역본부 | 울산광역시 | 052-226-0526 |
| 경남지역본부 | 경상남도(창원시, 함안군, 의령군, 창녕군, 진주시, 사천시, 산청군, 거창군, 함양군, 합천군, 하동군, 남해군, 통영시, 고성군, 거제시) | 055-269-0544 |
| 경남동부지사 | 경상남도(김해시, 밀양시, 양산시) | 055-371-7556 |
| 광주광역본부 | 광주광역시, 전라남도(나주시, 화순군, 담양군, 곡성군, 구례군, 장성군, 영광군, 함평군) | 062-949-8727 |
| 전북지역본부 | 전라북도(전주시, 정읍시, 남원시, 완주군, 임실군, 순창군, 무주군, 진안군, 장수군) | 063-240-8542 |
| 전남지역본부 | 전라남도(목포시, 신안군, 영암군, 무안군, 강진군, 완도군, 해남군, 진도군, 장흥군) | 061-288-8735 |
| 제주지역본부 | 제주특별자치도 | 064-797-7517 |
| 전북서부지사 | 전라북도(익산시, 김제시, 군산시, 부안군, 고창군) | 063-460-3623 |
| 전남동부지사 | 전라남도(여수시, 순천시, 광양시, 고흥군, 보성군) | 061-689-4953 |
| 대구광역본부 | 대구광역시(북구, 중구, 동구, 수성구) 경상북도(영천시, 경산시, 청도군, 군위군) | 053-609-0565 |
| 대구서부지사 | 대구광역시(남구, 달서구, 서구, 달성군, 성주군, 칠곡군, 고령군) | 053-650-6837 |
| 경북지역본부 | 경상북도(구미시, 김천시,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, 영주시, 봉화군, 상주시, 문경시, 안동시, 의성군, 예천군, 영양군, 청송군) | 054-478-8024 |
| 경북동부지사 | 경상북도(포항시, 경주시, 영덕군, 울릉군, 울진군) | 054-271-2048 |
| 인천광역본부 | 인천광역시 | 032-510-0526 |
| 경기지역본부 | 경기도(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) | 031-259-7128 |
| 경기북부지사 | 경기도(의정부시, 동두천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양주시, 포천시, 연천군), 강원도(철원군) | 031-828-1945 |
| 고양파주지사 | 경기도(고양시, 파주시) | 031-540-3843 |
| 경기중부지사 | 경기도(부천시, 김포시) | 032-680-6530 |
| 경기서부지사 | 경기도(광명시, 안양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안산시, 시흥시) | 031-481-7516 |
| 경기동부지사 | 경기도(성남시, 하남시, 이천시, 광주시, 여주시, 양평군) | 031-785-3327 |
| 경기남부지사 | 경기도(평택시, 안성시, 오산시) | 031-259-7198 |
| 대전세종광역본부 |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(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, 보령시, 금산군, 홍성군, 서천군, 부여군, 청양군) | 042-620-5657 |
| 충북지역본부 | 충청북도(청주시, 진천군, 괴산군, 보은군, 증평군, 옥천군, 영동군) | 043-230-7125 |
| 충북북부지사 | 충청북도(충주시, 제천시, 단양군, 음성군) | 043-849-1042 |
| 충남지역본부 | 충청남도(천안시, 아산시, 당진시, 보령시, 서산시, 예산군, 태안군) | 041-570-3443 |